

통계로 본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실태¹⁾

김경례(Kim, Kyung-rye)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kgr2037@naver.com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10.21.)을 앞두고, 국내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폭력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스토킹법은 반의사불벌죄조항 포함,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 부재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변화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데이트폭력, 스토킹, 젠더폭력,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 성평등문화 확산



1) 이 글은 사)광주여성성의전화에서 개최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심터 '비상' 개소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표문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애써 주신 광주여성성의전화 활동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 들어가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4월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톱킹처벌법이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년 8월에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 행위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안(데이트폭력방지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스톱킹 피해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환영 만한 일이지만 그간 수많은 여성들이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으로 희생을 당했고 그때마다 그 심각성을 알리고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의 처벌 근거를 마련, 처벌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범사회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20여년이 지나서야 스톱킹처벌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및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교제가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의 세뇌 등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다 같은 이유로 신고가 늦어지거나 신고율 또한 낮아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상담 및 신고, 형사입건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 303건이었고 2015년 7,692건에서 3년 사이에 54.3%나 증가했다. 또한, 2018년 8월 기준 데이트폭력 혐의별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고, 살인·살인미수도 353건 발생해 매달 6.3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데이트폭력의 주요 동기는 ‘이별살인’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것처럼, 결별 요구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햇김에 우발적으로’, ‘무시해서’,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등 사실상 파트너를 성적 도구 및 소유물로 바라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파트너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스톱킹하는 행위는 소유욕에 기반한 지나친 집착에 근거한다. 데이트폭력 및 스톱킹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의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젠더권력관계 및 사회구조·문화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여성의전화 사무국에서 수집한 언론, 한국여성의전화, 경찰청 2019년, 2020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데이트폭력 및 스톱킹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한 통계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언론통계 자료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분노게이지」의 2020년(2019년 통계), 2021년(2020년 통계)

2) “데이트폭력, 사회적 비극의 메아리로 떠돌지 않으려면”, 업다운뉴스, 2018.11.4.

발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자료와 경찰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찰청 통계자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2. 언론통계 자료

2-1. 2019년

【표 1】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범죄유형 \ 피해자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기타	소재	주변인	총계
살인	47	32	9	88	11	99
살인미수 등	36	60	12	108	22	130
누계(명)	83	92	21	196	33	229

*배우자관계: 현재 또는 과거(사실) 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 여성

*데이트관계: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관계의 여성(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배우자나 데이트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표 2】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불상	
배우자 관계	살인	0	0	4	7	14	6	5	2	9	47
	살인 미수 등	0	1	5	7	3	4	0	1	15	36
	합계	0	1	9	14	17	10	5	3	24	83
데이트 관계	살인	0	11	5	5	5	1	1	0	4	32
	살인 미수 등	3	13	9	6	7	1	2	0	19	60
	합계	3	24	14	11	12	2	3	0	23	92
기타	살인	0	1	1	2	4	0	0	0	1	9
	살인 미수 등	1	1	1	0	3	2	0	0	4	12
	합계	1	2	2	2	7	2	0	0	5	21
누계(명)		4	27	25	27	36	14	8	3	52	196
비율(%)		2.0	13.8	12.8	13.8	18.4	7.1	4.1	1.5	26.5	100.0

(*주변인 피해 제외)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했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살인미수) 여성은 배우자 관계에서는 83명, 데이트 관계에서는 92명으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생활 통제부터 협박, 폭행, 납치 등 다양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다.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및 주변인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태현 세 모녀 살인사건³⁾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높고(18.4%), 20대와 40대가 동률(13.8%), 30대(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스토킹은 사랑 또는 친밀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그간 왜곡된 성문화, 불평등한 젠더관계, 그리고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2-2. 2020년

【표 3】 2020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재	주변인	총계
살인	45	48	4	97	18	115
살인미수 등	50	77	4	131	39	170
누계(명)	95	125	8	228	57	285

*배우자관계: 현재 또는 과거(사실) 혼인 상태의 아내

*데이트관계: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관계의 여성(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배우자나 데이트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3) 김태현은 피해자 모녀 가운데 큰 딸인 B씨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은 살해 이전에 B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 4】 2020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1	4	12	14	5	3	6	45
	살인 미수 등	0	5	4	6	4	2	1	28	50
	합계	0	6	8	18	18	7	4	34	95
데이트관계	살인	1	12	7	6	9	5	1	7	48
	살인 미수 등	4	17	12	9	5	1	2	27	77
	합계	5	29	19	15	14	6	3	34	125
기타	살인	0	0	2	0	2	0	0	0	4
	살인 미수 등	0	0	1	0	0	0	0	3	4
	합계	0	0	3	0	2	0	0	3	8
누계(명)		5	35	30	33	34	13	7	71	228
비율(%)		2.2	15.4	13.2	14.5	14.9	5.6	3.1	31.1	100

(*주변인 피해 제외)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의 피해자 모두 83명에서 95명, 92명에서 125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변인의 피해 역시 33명에서 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20대의 피해 비율(15.4%)이 높아졌고 2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청년 여성층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자료

3-1.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성폭력상담소 7개소, 통합상담소 7개소, 이주여성상담소 1개소)로, 2019년 전체 상담 건수는 29,50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 14,775건, 성폭력 9,248건, 데이트폭력 592건으로 나타났다.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19년 상담 건수는 총 2,276건이다. 이 중 재상담이 1,034건, 초기상담이 1,24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초기상담 1,24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5】 2019년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전)배우자	친족	애인· 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310	191	218	19	151	26	25	75
비율(%)	25.0	15.4	17.6	1.5	12.2	2.1	2.0	6.0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건수	6	14	26	29	86	66		1,242
비율	0.5	1.1	2.1	2.3	6.9	5.3		100

3-2. 2020년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나 2019년에 비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모든 유형의 젠더폭력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2019년 통계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20년 데이터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건을 제외한 초기상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 2020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합계
건수	475	587	182	126	122	1,492
비율(%) ¹⁾	41.6	51.4	15.9	11.0	10.7	-

*중복응답

주 : 1) 초기상담 1,143건 중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기타가 차지하는 비율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그 결과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

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톱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 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표 7】 2020년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전)배우자	친족	애인·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272	179	193	28	133	23	16	64
비율(%)	25.1	16.5	17.8	2.6	12.3	2.1	1.5	5.9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건수	21	10	36	18	71	20		1,084
비율(%)	1.9	0.9	3.3	1.7	6.5	1.8		10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포율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배우자, 애인·데이트 상대자, 친족 관계가 각 1, 2, 3위로 나타나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젠더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019년 2.3%, 2020년 1.7%에 그쳐 대부분의 젠더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찰청 통계자료

경찰청은 2016년 2월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했다. 또한, 스톱킹 112신고 코드는 2018년 6월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 및 스톱킹 실태와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스톱킹 범죄는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검거 인원은 산출되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데이트폭력 피해자 수는 1만 245명에 달하며 이 중 77.6%가 여성으로, 범죄 자체가 젠더폭력화된 경향을 보인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4%, 30대 25.2%, 40대 20%, 50대 14.3%, 60대 3.7%, 10대 2.8%로 나타나⁴⁾ 20, 30대에서 데이트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7.4

【표 8】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검거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스토킹신고		-	-	2,772	5,468	4,515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	9,364	14,136	18,671	19,940	18,945
	검거	8,367	10,303	10,245	9,858	8,982

출처: 경찰청

※ 스톱킹 112신고 코드는 '18.6월 신설(2,772건은 '18.6월~12월 통계임)/스토킹 검거 인원은 현재 별도의 스톱킹 범죄 처벌조항이 없어 산출 불가

※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사안(단순 말다툼 등 현장종결, 중북·오인신고, 즉결심판, 훈방, 상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2018년에 비해 2019년,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연간 약 2만 건의 데이트폭력이 신고되고 약 1만 건이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데이트폭력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톱킹 피해 역시 연간 약 5천 건이 신고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스톱킹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핵심은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이 젠더폭력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젠더폭력은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자에 위치하는 여성을 향해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이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 인식 등이 젠더폭력의 원인이다.

대검찰청의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9.9%였으나 매년 급증해 2017년에는 90%를 넘었다. 같은 해 8만 4,000여 명의 여성이 상해를 입었고 1,367명은 사망했다.⁵⁾ 이는 폭행, 성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을 젠더폭력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국가 및 지역성평등 지수에서 안전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대단히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젠더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은 일상에서부터 불안과 공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간관계의 형성을 꺼리게 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표 9】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구분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죄 등 기타
				계	기수	미수		
'16년	8,367	6,233	1,017	52	18	34	224	841
'17년	10,303	7,552	1,189	67	17	50	138	1,357
'18년	10,245	7,461	1,089	42	16	26	99	1,554
'19년	9,858	7,003	1,067	35	10	25	84	1,669
'20년	8,982	6,416	898	31	14	17	51	1,586

출처: 경찰청

5)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7.4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가장 많고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살인(미수) 순으로 나타났다.

5. 문제점 및 제언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 2013년부터 스톱킹 범죄의 처벌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죄명이 ‘지속적 괴롭힘’이었던 만큼 다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었다. 처벌 수위 역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톱킹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됐다. 스톱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스톱킹처벌법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스톱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스톱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정의). 주지하다시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일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톱킹 범죄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법에서 스톱킹 범죄 등의 처리절차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제3조~제11조)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황이라면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⁶⁾

또한, 현행법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선 변호사들은 “데이트폭력이 갖는 특수성(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기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접근금지가처분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리는

6)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하였다. 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톱킹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인순, 피해자보호강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뉴스프리존. 2011.6.11

등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⁷⁾ 또한 “데이트폭력을 피하기 위한 저항이 폭력으로 기소되거나 데이트폭력에 수반된 성폭력이 연인 간 문제로 여겨져 기소가 안 되거나” 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중심적 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 없이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금번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데이트폭력 근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며 포괄적차별금지법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독자적 제재규정을 담은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는 항상 여성인권 존중과 성평등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실질적인 젠더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홍보 강화,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및 젠더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제도 마련,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촘촘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과 가정, 학교, 마을, 직장 등 일상에서 젠더차별 해소와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7)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7.4